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·생활·생업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시 자격 요건, 배분 물량, 부대시설 면적 상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, 공익사업에 근린생활시설 편입 시 11개 용도에 한정하여 허용했던 이축 대상을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시설 전체로 조정하며, 주택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시 허가요건을 지목과 주택의 적법성 여부로 한정하여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

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동식물시설 및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의미, 허가 대상 시설의 승계 및 부대시설 설치면적 비율과 관련한 조례규정의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라목나) 중 “200제곱미터”를 “300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목 다) 중 “2,000제곱미터”를 “3천제곱미터”로 한다.

별표 1 제3호거목다) 중 “경우에는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”을 “경우에는 적법하게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”로 한다.

별표 1 제5호라목에서 1)부터 11)까지를 삭제하고, 같은 목 나) 본문 중 “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”를 “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으며, 신축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”로 하며, 같은 란에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목 다) 중 “기존 근린생활시설(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)”을 “공익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적법하게 건축·운영(이 영 규정에 적합하게 용도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되던 근린생활시설(이하 ‘기존 근린생활시설’이라 하며,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①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

② 휴게음식점 ·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

(가) 휴게음식점 ·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.

(나) 휴게음식점 ·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 부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 또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, 도랑,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(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장(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(다)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.

③ 이용원 · 미용원 및 세탁소 :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.

④ 의원 · 치과의원 · 한의원 · 침술원 · 점골원 및 조산소

⑤ 탁구장 및 체육도장

⑥ 기원

⑦ 당구장

⑧ 금융업소 · 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업소

⑨ 수리점 : 자동차전문정비업소, 자동차경정비업소(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

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)를 포함한다.

⑩ 사진관 · 표구점 · 학원 · 장의사 및 동물병원

⑪ 목공소 · 방앗간 및 독서실

별표 1 제5호사목가) 본문 중 “10년이상거주자”를 “5년이상거주자”로 하고, 같은 목 나) 중 “3배”를 “4배”로 하며, 같은 목 라) 중 “200제곱미터”를 “300제곱미터”로 한다.

별표 1 제5호아목나) 중 “200제곱미터”를 “300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목 다) 중 “2천제곱미터”를 “3천제곱미터”로 하며, 같은 목 라) 본문 중 “10년이상거주자”를 “5년이상거주자”로 하고, 같은 목 마) 중 “3배”를 “4배”로 한다.

별표 1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태양에너지 설비(제2호자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)	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한 주택(주택의 대지를 포함한다)에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, 제19조제14호에 따른 설치 위치 및 규모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표 2 제1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카. 별표 1 제5호에 따라 설치자격을 한정(마을공동, 5년이상거주자, 10년이상거주자, 지정당시거주자 등)하는 시설의 승계와 관련한

사항은 시설의 허용 취지 및 관할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타. 주 용도시설 대비 부대시설의 설치면적 비율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허용 취지 및 관할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린생활시설 이축에 관한 적용례) 별표1 제5호라목다)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허가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5